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038

발의연월일: 2024. 9. 13.

발 의 자: 강명구·박성민·이헌승

서일준 · 김형동 · 주호영

박덕흠 • 권영세 • 박준태

백종헌 · 서지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방산 수출수주액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170억 달러, 130억 달러를 달성하고, 수출대상국이 12개국으로 다양해져 황금기를 맞고 있음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첨단기술을 국방분야에 신속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므로 국방기술품질원의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방위산업진흥원으로 독립·개편하고자 함.

더불어, 방산혁신클러스터 선정, 방산 산·학·연 집적 등 지역별특화된 방위산업을 기반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외 지역 분원을 두어 현재 수행하고 있는 방산 육성 사업, 기 조성된 방산 인프라와시너지 효과를 유도하여 부품개발의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이에 기존의 '부품국산화' 대신 '부품개발' 개념을 도입하고, 방위산

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 사업 및 기능을 규정하면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특례와 벌칙적용에서 공무원의제 등 조문을 신설하여 방위 산업진흥원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 개정, 제18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부품관리 정책 수립 및 부품 국산화개발 촉진 등)"을 "(부품관리 정책 수립 및 부품개발 촉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각 호 외의 부분 중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를 "부품개발 사업자"로,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을"을 "부품개발 사업을"로 하며, 같은 조제3항 중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를 "부품개발 사업자"로,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를 "부품개발사업자"로,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에"를 "부품개발 사업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를 "부품개발사업자"로 한다.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를 "부품개발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품 국산화개발"을 "부품개발"로 하며, 같은 조제7항(종전의 제6항) 중 "국산화개발된"을 "개발된"으로 하고, 같은 조제8항(종전의 제7항) 중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를 "부품개발사업자"로 하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장이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방위

산업진흥원에 부품개발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제18조의 제목 "(방위산업 발전의 지원 등)"을 "(방위산업진흥원의 설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방기술품질원에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를 "방위산업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2항) 중 "방위사업청장은"을 "정부는"으로, "제1항"을 "진흥원의설립 및 운영과 제4항"으로, "출연"을 "출연하거나 보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 5. 임원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 7.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8. 해산에 관한 사항
- ④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위사업청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인가를 하기 전 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 연구
- 2.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 3. 방위산업 부품·장비 개발 기획 및 사업 관리
- 4. 방위산업 부품 개발 관련 정책ㆍ제도 연구
- 5. 방위산업 부품 개발
- 6. 방위산업 부품 개발 대상품목 조사 · 분석 및 공개
- 7. 방위산업 부품 · 장비 개발 기술 지원 및 사업화 지원
- 8. 방위산업 부품 성능시험 수행·지원 및 이를 위한 시험 장비·시설의 설치 등 기반 조성
- 9. 방위산업 부품 표준의 개발 및 보급
- 10. 국방중소 · 벤처기업 기술지원 및 육성사업에 대한 업무지원
- 11. 중소기업 우선선정 대상 품목에 대한 조사 · 분석
- 12. 컨설팅 및 자금융자 사업에 대한 업무지원
- 13. 방위사업청장의 방위산업 수출진흥 업무에 대한 지원
- 14. 제2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평가 및 사후 관리

- 15. 그 밖에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 장이 위탁하는 업무
- ⑦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⑧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사무소 소재지 외에 지역 방위산업에 특화된 지역 분원을 설립할 수 있다.
- ⑨ 진흥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①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 정부는 진흥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원에 대하여 「군수품관리법」 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제26조제2항 중 "장 또는"을 "장, 진흥원의 장 또는"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진흥원의 설립준비) ① 방위사업청장은 진흥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방위산업진 흥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② 설립위원회는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준비단장은 방위사업청 차장이 된다.
 - ③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설립등기를 한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⑤ 진흥원의 최초 임원은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임명한다.
 -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진흥원의 설립비용) 국가는 진흥원의 설립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다.

- 제4조(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채권·채무 및 직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방기술품질원이 소속기구인 국방기술진흥연
 구소의 장의 명의로 한 행위와 관련된 채권·채무와 국방기술품질원이 자산 중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장이 사용·관리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진흥원의 기능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이 승계한다.
 - ② 진흥원의 설립 당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정관이 정하는 기능·조직 및 정원의 범위 안에서 연구원이 이를 승계한다.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전단 및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을 각각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위산업진흥원"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을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및 방위산업진흥원의 장"으로 한다.

②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국방기술품질원"을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위산업진흥원(이하 "방위산업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방위사업청・각군・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

원"을 "방위사업청·각군·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방위산업진흥원"으로 한다.

제50조제3호 및 제4호 중 "국방기술품질원·방산업체·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을 각각 "국방기술품질원·방위산업진흥원·방산업체 ·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부품관리 정책 수립 및 부	제9조(부품관리 정책 수립 및 부
품 국산화개발 촉진 등) ① (생	품개발 촉진 등) ① (현행과 같
략)	<u> </u>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	②
라 발굴된 부품의 개발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u>부품 국산화개발</u>	<u>부품개발 사업자</u> -
<u>사업자</u> 로 선정하여 <u>부품 국산화</u>	<u>부품개발 사업</u>
개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	<u> </u>
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	③
라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로	<u>부품개발 사업자</u>
선정된 자(이하 <u>"부품국산화개</u>	<u>"</u> 부품개발사업
<u>발사업자"</u> 라 한다)가 실시하는	<u> 자"</u>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에 소요되	부품개발 사업에
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	
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	4
라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를 선	<u>부품개발사업자</u>
정하는 경우 국방중소 · 벤처기	
업을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한	
다.	.
<u><신 설></u>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위사

⑤ 국방부장관・방위사업청징
· 각군 참모총장·국방과학연
구소장 • 국방기술품질원장은
<u>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u> 가 요청
할 때에는 요청한 자의 부담으
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생략)
- 2. <u>부품 국산화개발</u> 결과에 대한 시험평가 지원
- ⑤ 방위사업청장·각군 참모총 장·국방과학연구소장 및 방산업체등은 제2항에 따라 <u>국산화</u>개발된 부품에 대하여 무기체계 적용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 ①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의 선정요건·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방위산업 발전의 지원 등)

<u>업성상이 제18소에 따라 설립된</u>	_
방위산업진흥원에 부품개발 시	ŀ
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u>:</u>
그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
출연할 수 있다.	
<u>⑥</u>	-
	-
	-
부품개발사업자	-
	-
	-
1. (현행과 같음)	
2. <u>부품개발</u>	-
<u>⑦</u>	-
	-
개발된	<u> </u>
	-
<u>⑧</u> 부품개발사업자	-
	-
	-
	-
	\
세18조(방위산업진흥원의 설립	<u>)</u>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	발
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	하
여 국방기술품질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순
<u>있다</u> .	
1 의보에취상 스피스 상태 :	_

- 1.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 사・연구
- 2.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 3. 부품 국산화에 대한 기술지 원 및 사업관리
- 4. 부품 국산화개발 대상품목 조사・분석 및 공개
- 5. 민간개발 장비ㆍ부품에 대한 기술지원 및 성능시험 지원
- 6. 국방중소·벤처기업 기술지 원 및 육성사업에 대한 업무 지원
- 7. 중소기업 우선선정 대상 품 목에 대한 조사 · 분석
- 8. 컨설팅 및 자금융자 사업에 대한 업무지원
- 9. 방위사업청장의 방위산업 수 출진흥 업무에 대한 지원
- 10.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 | <삭 제> 업에 대한 성과 분석 · 평가

-- 방위산업진흥원(이하"진흥 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u><삭 제</u>>

<삭 제>

<삭 제>

<삭 제>

및 사후관리

11. 그 밖에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 및 방 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삭 제>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 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 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④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위사 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인가를 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

사 • 연구

- 2.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위한 사업
- 3. 방위산업 부품·장비 개발 기획 및 사업 관리
- 4. 방위산업 부품 개발 관련 정 책·제도 연구
- 5. 방위산업 부품 개발
- 6. 방위산업 부품 개발 대상품 목 조사·분석 및 공개
- 7. 방위산업 부품·장비 개발 기술 지원 및 사업화 지원
- 8. 방위산업 부품 성능시험 수 행・지원 및 이를 위한 시험 장비・시설의 설치 등 기반 조성
- 9. 방위산업 부품 표준의 개발및 보급
- 10. 국방중소 · 벤처기업 기술지원 및 육성사업에 대한 업무지원
- 11. 중소기업 우선선정 대상 품 목에 대한 조사·분석
- <u>12. 컨설팅 및 자금융자 사업에</u> <u>대한 업무지원</u>
- 13. 방위사업청장의 방위산업

 ②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

 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

 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u><신 설></u>

<신 설>

수출진흥 업무에 대한 지원

14. 제2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
업에 대한 성과 분석・평가
및 사후관리

- 15. 그 밖에 방위산업의 발전과관련하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 - ----- 출연하거나 보조----

-----.

- ①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⑧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사무소 소재지 외에 지역 방위산업에 특화된 지역 분원을 설립할 수 있다. ⑨ 진흥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 ⑨ 진흥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①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 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 설>

-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 략)
 - ② 방위사업청장은 이 법에 따 른 권한의 일부를 국방기술품질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따른 방위산업 과 관련된 정부출연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 ③ (생략)

<신 설>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조의2(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 정부는 진흥원의 운영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원 에 대하여_「군수품관리법」 또 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 고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 (현행과 같음)
- 원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 --- 장, 진흥원의 장 또는 ----

 - ③ (현행과 같음)
 -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 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 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 운영

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
 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